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11월 20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0일(월)

## 4. 관계법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5. 폐지이유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기금 존속기한 도래  
(존속기한 : 2017.12.31)
- 상암동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임

## 6. 기금 재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총 수입			총 지출			잔액
합계	징수금	이자수입	합계	서울시납부	마포구집행	
10,028	9,045	983	10,010	8,104	1,906	18

※ 상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2010년 이후 기금 징수실적 없음

## 7. 검토의견

### ○ 본 폐지조례안은

상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1. 안 건 명

-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11월 20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0일(월)

##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5. 변경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 폐지

## 6. 기금현황표

(단위 : 천원)

편 성 목	기정액	지출액(변경)	증감
합 계	12,107	12,10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1,050	1,050	-
201 일반운영비	1,050	1,050	-
01 사무관리비	1,050	1,050	-
여유자금 예치	11,057	-	△11,057
602 예치금	11,057	-	△11,057
내부거래	-	11,057	11,057
701 기타회계등 전출금	-	11,057	11,057

## 7. 검토의견

### ○ 본 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계획에 따라 기금잔액인 1,105만 7천원을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11월 20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0일(월)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 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명시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등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6. 주요 개정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관련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정비
  - 제6조3항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의 정비 등 띄어쓰기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전문개정 2011.5.30.]